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,402,335,240	132,070,057
일반회계	3,923,566,083	117,706,982
특별회계	478,769,157	14,363,075
기타특별회계	478,769,157	14,363,075
소방특별회계	166,464,704	4,993,94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25,219,682	6,756,590
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	12,380,005	371,400
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32,029,012	960,87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12,252,890	367,587
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30,422,864	912,68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,732,47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6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